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7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1086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공사

피 고 1. [redacted]군수

2. [redacted]시장

3.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15. 9. 24.

판 결 선 고 2015. 10. 15.

주 문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redacted]군수가 2014. 9. 4. 한 재산세 2,487,120원의 부과처분 중 2,388,5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나. 피고 [redacted]시장이 2014. 9. 3. 한 재산세 1,599,340원의 부과처분 중 1,535,920원을 초과하는 부분,

다. 피고 [redacted]군수가 2014. 9. 1. 한 재산세 517,210원의 부과처분 중 496,7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7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redacted]정부와 [redacted]공사의 출자를 받아 1983. 8. 18.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2014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4. 6. 1. 현재 주요주주는 [redacted] 26.15%, [redacted]공사 20.47%, [redacted]단체 7.93%([redacted]시 3.34%, [redacted]도 1.02%, [redacted]시 0.57%, [redacted]시 0.55%, [redacted]도 0.49%, [redacted]광역시 0.35%, [redacted]도 0.34%, [redacted]광역시 0.32%, [redacted]광역시 0.28%, [redacted]북도 0.26%, [redacted]시 0.22%, [redacted]남도 0.16%, [redacted]도 0.04%) 등이다.

나. 피고 [redacted]군수는 구 [redacted]군 군세 감면조례(2012. 4. 9. [redacted]도 [redacted]군 조례 제2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피고 [redacted]시장은 구 [redacted]시 시세 감면조례(2012. 3. 2. [redacted]도 [redacted]시 조례 제1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피고 [redacted]군수는 구 [redacted]군 군세 감면조례(2011. 10. 13. [redacted]도 [redacted]군 조례 제2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각 조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원고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가 고유 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7

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각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일정 비율(민간출자분 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하여 왔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관할구역 소재 건축물(업무용 건물 및 가스관, 수도배관 등 구축물)에 대하여 감면 없이 피고 [redacted]군수는 2014. 9. 4. 2014년분 재산세 2,487,120원을, 피고 [redacted]시장은 2014. 9. 3. 2014년분 재산세 1,599,340원을, 피고 [redacted]군수는 2014. 9. 1. 2014년분 재산세 517,21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2.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5. 2. 16.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지방자치단체는 원고의 설립등기 당시부터 자본금 납입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관련부처의 협의가 지체되어 납입이 지연된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라는 문언은 반드시 설립시의 최초 자본금 납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원고는 1986년 말경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등이 원고의 지분을 취득한 이후에 설립목적인 천연가스공급을 본격적으로 개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위 문언을 당해 법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7

설립등기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최초 자본금을 납입한 경우로 해석한 것은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부당한 축소해석이고, ② 한국가스공사법 제18조에 따라 원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라는 문언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고,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를 신설한 입법자의 의도는 지방세 감면대상은 그대로 유지하되 감면비율만 축소하고자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그 처분금액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 제3호가 정하는 감면비율인 100분의 50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비율인 7.93%를 곱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로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한국가스공사법(1986. 5. 12. 법률 제3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7

이하 '구 한국가스공사법'이라 한다) 제4조는 원고의 자본금은 2천억 원으로 하고, 위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1986. 10. 6. 대통령령 제11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 내지 5조는 원고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천만 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은 1만 원으로 하며, 원고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만 주 이상으로 하고,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국가가 인수할 주식에 대하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고, 서울특별시가 인수할 주식에 대하여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며, 한국전력공사가 인수할 주식에 대하여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입법 취지 등과 함께, 갑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조례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는 취지는 그 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 정책 등에 부응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② 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등 대부분의 업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점(구 한국가스공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7

법 제1조, 제21조, 제31조 등 참조), ③ 원고를 설립하기 위하여 구 한국가스공사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원고의 자본금은 2천억 원으로 하되, 위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출자하도록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원고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④ 원고가 국가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출자받은 자본금으로 1983. 8. 18. 설립등기를 마치고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준비 중이던 1986년경 서울특별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장관회의 및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원고의 지분 3.12%를 취득한 것을 시작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원고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원고의 지분 7.93%를 보유하고 있는 점, ⑤ 당초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예정되어 있었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후 설립등기를 하였는지 그 전에 설립등기를 하였는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여부에 차별을 둘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의 개정이유에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에 관한 규정인 제85조의2를 신설하는 이유에 대하여 '농수산물공사, 도시철도공사 및 지방공단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의 감면 수준인 100퍼센트의 범위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지방공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의 감면 수준을 법정화하되 현행 10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축소함'이라고 되어 있는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입법 당시 기존 조례에서 정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법정화하면서 감면비율만 축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1], ⑦ 관계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충족하도록 한 자본금을 충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7

하여 설립한 후 설립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을 받은 법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을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한 법인과 달리 규율할 필요성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 국민 편익을 위해 추진하는 법인 설립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이후로 미뤄야 한다면 이는 공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같이 설립 당시 예정된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 2항은 지방세 감면대상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은 지방세 감면대상을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문언상 원고가 같은 조 제3항을 적용받기 위하여 반드시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이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한국가스공사법 제18조 제3항은 원고에 대하여 이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주주가 원고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이사회가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등 상법상 주식회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정당한 세액

1)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은 그 감면비율만을 100분의 50으로 다시 축소하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7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원고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액에서 이 사건 각 처분액의 100분의 50에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4. 6. 1.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인 7.93%를 곱한 금액(감면액)을 공제한 액수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아래 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아 래 -

(단위: 원)

처분청	과세대상	처분액	감면액	정당한 세액
[redacted]군수	[redacted]군 [redacted]읍 [redacted]리 [redacted]외 39 건	2,487,120	98,620	2,388,500
[redacted]시장	[redacted]시 [redacted]면 [redacted]리 [redacted]동 [redacted]호 외 4건	1,559,340	63,420	1,535,920
[redacted]군수	[redacted]군 [redacted]읍 [redacted]리 [redacted]동 [redacted]호 외 23건	517,210	20,510	496,700
합 계		4,603,670	182,550	4,421,120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방승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7

판사 인형준

판사 정혜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7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 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7

■ 구 한국가스공사법(1986. 5. 12. 법률 제3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 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출자는 현금외의 재산으로도 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제5조 (주식의 발행)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가스공사법

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상법」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구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1986. 10. 6. 대통령령 제11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천만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제4조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공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만주이상으로 한다.

제5조 (주식의 발행시기 및 주금의 납입액등)

① 국가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한다.

② 서울특별시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③ 한국전력공사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동력자원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7

장관이 정한다.

④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경우의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 구 음성군 군세 감면조례(2012. 4. 9. 충청북도 음성군 조례 제2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구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2012. 3. 2. 충청북도 충주시 조례 제1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구 단양군 군세 감면조례(2011. 10. 13. 충청북도 단양군 조례 제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7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